화성시가족센터(가족만세센터) 시설 대관규정(안)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⁾」에 따라 가족센터 시설의 이용신청, 사용료, 감면 및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- 1. "시설"이란 화성시 가족센터 내의 강의실, 요리실, 만세홀,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별표로 정한 공간을 말한다.
- 2. "이용자"란 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3. "이용료"란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이용자격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화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
- 2. 화성시 관내 학교 또는 직장에 소속된 자
- 3. 공공성과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
- 4. 그 밖에 운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¹⁾ 화성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이용신청)

- 1.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신청 방법은 방문, 전자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- 3. 이용신청은 선착순 접수 원칙으로 하되, 공공성,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료 및 감면)

- 1. 시설별 이용료는 「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기준에 따른다.
- 강의실: 시간당 1만5천원
- 요리교실: 시간당 3만원
- 가족소통교류공간 및 만세홀: 시간당 5만원 등
- 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후원하는 행사
 - 2)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- 3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 - 4)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동반 시
 - 5) 자원봉사, 시민운동, 평생학습 등 공익목적의 행사 감면 신청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조례 제9조에 따라, 이용시간 외 또는 휴관일 사용 시에는 20%를 가산한다

제6조(이용료 납부·변경·취소 및 반환2))

- 1.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운영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
- 2.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다.
 - 1)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이용예정일 5일까지 별지 서식 제3호(시설 사용 변경·취소 신청서)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
 - 2) 운영자는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의 사유 및 시기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. 반복적인 취소하 허위 신청은 이후 대관 신청 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.
- 3.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.
 - 1) 천재지변, 시설의 긴급 운영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 반환
 - 2) 이용자 요청에 의한 반환: 전날까지 요청 시 전액 반환 반환 신청은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당일 요청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7조(이용의 제한 및 취소)

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 미납 또는 납기일 미준수
- 2. 정치·종교·영리 목적의 이용 또는 사적 행사
- 3. 시설 훼손, 질서 문란 등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경우

²⁾ 화성시 공공시설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조례(제11조)

- 4.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2회 이상 이용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5.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

제8조(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)

- 1. 이용자는 기존 설비 외 추가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
- 2.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종료 후 즉시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3. 훼손 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
제9조(기타사항)

- 1. 음주, 흡연, 고성방가 등은 일절 금지하며, 위반 시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.
- 2.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「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및 운영자 운영방침에 따른다.

[별지 제1호]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서
[별지 제2호서식] 시설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
[별지 제3호서식] 시설 사용(변경·취소) 신청서
[별지 제4호서식] 기겅 사용료 반환 신청서
[별표] 이용료 금액 기준